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합109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개명 전 이름: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애피

담당변호사 김종현

피 고 주식회사 J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주식회사 K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9. 체결한 매매계약을 1,1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385,000,000원, 원고 F에게 137,500,000원, 원고 C, D, E, G, H에게 각 110,000,000원, 원고 I에게 82,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L이나, 그의 형이자 사내이사인 M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분양, 공급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사업의 진행

- 1) K은 울산 N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이라 한다) 및 울산 남구 O 메디컬 센터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상가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상가 사업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 2) K은 2016. 6. 29.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사이에, K이 이 사건 각 사업의 지주작업 및 시공사 선정, 대출, 설계 등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P은 계약금 투자 유치 및 분양대행 업무를 맡되, 그

수익금을 K와 P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K은 이 사건 각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① 2016. 6. 29. Q으로부터 울산 남구 R 대 273㎡를, ② 2016. 6. 20. S로부터 T 대 345㎡ 및 ③ U 대 110㎡를, ④ 2016. 6. 20. V으로부터 W 대 197㎡를, ⑤ 2016. 6. 29. X로부터 Y 대 217㎡를, ⑥ 2016. 6. 20. Z으로부터 AA 대 347㎡를 각 매수하여, 2016. 8.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울산 남구 T 대 345㎡, W 대 197㎡, Y 대 217㎡, AA 대 347㎡, U 대 110㎡는 2017. 4. 3. 울산 남구 R으로 합병되면서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울산 남구 R 대 1,489㎡는 2018. 7. 24.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합병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주식회사 K에 대한 투자

1) P은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G, F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에 6,800만 원을 투자하면, 6,000만 원을 보장하고, 5개월 15일 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며, 원고 D에게 ‘선분양금 6,800만 원을 입금하고, 신축 후 1,000만 원 추가로 납입하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각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사업에 투자하면, 이 사건 상가 사업이 성공한 후 일정 이익금을 더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2) 원고들은 P을 통해 K에게 별지2 표 ‘이 사건 각 사업’란 기재 각 사업에 별지2 표 ‘투자금액’란 각 돈을 투자하였고, 별지2 표 ‘계약일’란 각 일자에 ‘비고’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 및 금전차용증서1)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및 금전차용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라. K의 처분행위

K은 피고와 사이에 2017.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8억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을 제4호증의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매매대금: 58억 원

계약금: 6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5억 원은 2017. 2. 23.에 지불한다.

잔금: 47억 원은 2017. 3. 21.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5. 매도자(K)가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에 지급할 용역비 3억 원(부가세 별도)은 매수자(피고)가 매매대금에서 공제 후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6. 단 대출실행 시 즉시 잔금을 지급한다.

8. 매도자(K)는 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신탁수익증권 등 가압류(사건번호: 2017카단109)를 중도금 전 말소하기로 한다(확인서 첨부하기로 한다).

마. M 등에 대한 형사판결

1) M, L은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D, G, F, I 등에 대한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444(병합), 2018고단148(병합), 2018고단493(병합), 2018고단813(병합), 2018고단1111(병합), 2018고단1824(병합), 2018고단1902(병합), 2018고단3527(병합), 2018고단3790(병합), 2019고단173(병합)호 사건]되었고, 이 법원은 2019. 8. 12.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M에게 징역 8년, L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M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2020. 2. 7.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9노878(병합), 2019노1429(병합)호 사건], M가 상고하였으나 2020. 5. 1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3463호 사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3, 20, 21, 23, 28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및 금전차용증서 기재와 같이 K에 대하여 원고 A은 385,000,000원, 원고 F은

137,500,000원, 원고 C, D, E, G, H은 각 110,000,000원, 원고 I은 82,500,000원의 투자금 채권 내지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K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K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1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K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2. 9. 이전인 2016년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른 상가를 제공하거나 투자금에 일정한 이익금을 더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및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들은 K에 대하여 투자금 채권 내지 약정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3, 24호증, 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7. 2. 9.경 K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감정평가액 5,418,24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② 주식회사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 11,023,004원, ③ AE조합(이하 ‘AE조합’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예금 5,464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①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 채무 약 110억 원 상당, ②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4억 3,000만 원, ③ AE조합에 대한 채무 3,444,246,573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K이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K의 재산상황 및 채무관계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절한 가격 책정,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그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6, 17, 24, 27호증, 을 제5, 6, 7, 14, 15,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G, M의 각 증언, 이 법원의 AB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AB는 2016. 7. 25. K과 사이에, AB가 K 소유의 울산 남구 AH 토지(이하 'AH 토지'라 한다)를 160억 원에 매매하여 주고, 컨설팅 수수료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B는 AH 토지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나, K으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6. 12.경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의뢰받았다. 이에 AB는 2016. 12. 27. K과 사이에, AB가 이 사건 부동산을 58억 원에 매매하여 주고, 컨설팅 수수료 3억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B의 대표이사였던 AG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2016. 12.경 피고의 대표이사 A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5억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고가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2017. 1.경 M, L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58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AG이 재차 피고에게 위 가격을 제시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출이 실행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매매가액을 58억 원으로 조율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와 K은 AG이 동석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AJ의 중개 아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나름의 경제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AG의 소개로 K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K과 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7. 2. 6., 같은 달 7. 피고의 대표이사 AI이 K에 합계 2,000만 원을 이체하고, K이 2017. 2. 9. AI에게 2,000만 원을 다시 이체하는 거래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가계약금이 오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피고는 K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6억 원을, 2017. 3. 6.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 같은 날 AK조합(이하 'AK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51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K의 AE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444,246,573원을 상환하였고, ㉡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의 기재와

같이 K의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AB에 대한 채무 3억 3,000만 원을, ㉔ K의 AF에 대한 채무 4억 3,000만 원을 각 대신 변제한 뒤 ㉔ 남은 495,253,427원을 K에 지급하여, 잔금 47억 원 중 46억 9,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50만 원이 미지급되기는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58억 원인 점과 비교했을 때 이는 매우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잔금지급에 필요한 담보대출을 위하여 매도인의 양해 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받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내용이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이 매도인인 K과 관련된 자금이라거나 K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이 다시 매수인인 피고에게 유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58억 원은 피고가 AK조합 담보대출 심사를 위하여 2017. 3. 7. 감정평가한 금액인 5,418,240,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부동산 개발,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이사 AI은 피고 설립 이전에도 주식회사 AL 등을 운영하며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8. 9.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동기가 비교적 분명하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AI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검찰청은 2020. 4. 22. 채무자인 K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 허위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부산고등법원 2020초재604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2. 18.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⑦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잔금지급기일을 2017. 3. 9.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6호증)가 작성되었다가 허위양도의 이행 과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가 추가로 작성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K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잔금지급기일 전 피고는 채권자를

AM, 채무자를 K,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정본(울산지방법원 2017타채100137호 사건)을 송달받았고, 이에 AG과 K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M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해제할 테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 사실, AM이 2017. 3. 6.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그 집행이 해제되었고, 2017. 3. 8. 그와 같은 내용이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K은 당초 예상치 못했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 이루어지며 피고가 당초 예정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집행이 해제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잔금지급기일의 변경 외에 최초 매매계약서(갑 제16호증)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⑧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K의 AB에 대한 채무, AF에 대한 채무, AE조합에 대한 채무, AN 주식회사의 신탁수익증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K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K의 AB에 대한 채무, AF에 대한 채무, AE조합에 대한 채무의 합계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가압류의 말소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AE조합에 대한 채무 외 다른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와 K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K이 고지하지 않는 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K의 일반채권자들의 존재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AG을 통해서만 K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조건 등을 조율하였는데, AG은 K에 대하여 AH 토지와 관련된 컨설팅 수수료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K과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사되어야만 K으로부터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수수료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AG으로부터 K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철웅, 판사 정의철 병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가, 재판장, 판 사, 판사 김아름

별지1

목 록

1. 울산 남구		대952㎡	
2. 울산 남구		대80㎡	
3. 울산 남구		대457㎡	-끝-

별지2

원고	이 사건 각 사업	투자금액		계약일	비고
		일자	금액(단위: 원)		
A	이 사건 상가 사업	2016. 2. 25.	6,800만 원	2016. 7. 25.	AO호를 111,44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및 6,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2016. 6. 7.	200만 원		
		2016. 6. 10.	1억 3,800만 원		
		2016. 7. 27.	3,900만 원		
C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	2016. 1. 27.	70만 원	2016. 5. 27.	AP호를 135,0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2016. 1. 27.	430만 원		
		2016. 5. 17.	1,000만 원		
		2016. 5. 27.	5,800만 원		
D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	2016. 4. 17.	500만 원	2016. 4. 19.	AQ호를 135,0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및 6,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2016. 4. 19.	6,300만 원		
E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	2016. 4. 19.	500만 원	2016. 4. 22.	AR호를 135,0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및 6,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2016. 4. 22.	6,300만 원		
F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	2016. 1. 14.	500만 원	2016. 7. 19.	AS호를 163,36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및 6,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²⁾
		2016. 1. 19.	6,300만 원		
	이 사건 상가 사업	2016. 9. 29.	1,700만 원	2016. 7. 26.	AT호를 163,36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및 6,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 ³⁾
G	이 사건 상가 사업	2016. 1. 14.	500만 원	2016. 7. 19.	AU호를 161,44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및 6,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⁴⁾
		2016. 1. 19.	6,300만 원		

H	이 사건 상가 사업	2016. 9. 29.	1억 1,900만 원	2016. 9. 29.	AV호를 163,360,000원에 분양 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및 6,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I	이 사건 상가 사업			2016. 7. 25.	AT호를 163,360,000원에 분양 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 및 6,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⁵⁾

2) 원고 F은 당초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에 2016. 1. 14. 500만 원, 2016. 1. 19. 6,3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 사업에 투자하여, 이 사건 상가 사업에 관하여 '비고'란 기재와 같은 분양계약서 및 금전차용증서가 각 작성되었다.

3) '비고'란 기재와 같은 분양계약서 및 금전차용증서에 원고 F과 I이 공동수분양자, 공동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G은 당초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에 2016. 1. 14. 500만 원, 2016. 1. 19. 6,3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 사업에 투자하여, 이 사건 상가 사업에 관하여 '비고'란 기재와 같은 분양계약서 및 금전차용증서가 각 작성되었다.

5) '비고'란 기재와 같은 분양계약서 및 금전차용증서에 원고 F과 I이 공동수분양자, 공동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각 금전차용증서에는 채무자가 '주식회사 A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 K'의 오기로 보인다.